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08호

2017. 10. 24.(화)
정 책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7일

-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전가정기본법」 제21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 위탁기간 종료('17.12.31)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18.01.01.~'20.12.31.)
- 선정기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있고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 (현)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15.1.1~'17.12.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예산액 : 213,900천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 가능
- 주요사무
 - 장애가족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 시·군·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Control-tower 로 시·군센터 업무지원
 -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사 파견 등
 - 장애의 이해·인식개선사업 및 장애가족을 위한 휴식지원사업, 장애가족실태 및 욕구조사, 정보제공 등
 - 그 밖에 장애인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민간위탁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7조·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 할 사무로 2015년부터 도내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왔음.
-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도움 제공자가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사례관리, 역량강화,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역할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적정함.

다. 종합의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들의 자녀를 돕기 위해 가족들에게 능력을 주고, 가족에게 힘을 실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와 법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할 것임.
- 또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연속성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등의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명품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참고①

타 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시도센터 시도비 지원	시군구 센터 지원 현황	비 고
서울	시센터 300 지원	4개구(서초구, 노원구, 동작구, 은평구)	서초구 167, 노원구 90, 동작구 53, 은평구 158
부산	시센터 154 지원		구센터 없음
대구	시센터 195 지원		구센터 없음
인천	시센터 50 지원		구센터 없음
광주	시센터 113 지원	4개구(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서구 64, 남구 64, 북구 64, 광산구 64
대전	-	2개구(동구, 중구)	동구 186, 중구 226
울산	시센터 107 지원		구센터 없음
세종	시센터 150 지원		구센터 없음
경기	도센터(수원) 300 지원 도센터(의정부) 200 지원	5개시(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광명시 180, 구리시 100, 시흥시 200, 안산시 100, 의왕시 179
강원	도센터 없음	2개시(원주시, 강릉시)	원주시 90, 강릉시 100
충북	도센터 214 지원	5개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음성군)	청주시 200, 충주시 120, 제천시 107, 옥천군 67, 음성군 86
충남	도센터 200 지원	11개 시·군 (천안, 당진, 아산, 서산, 보령, 계룡, 태안, 예산, 홍성, 금산, 서천)	1개 시군당 150 (천안, 당진, 아산, 서산, 보령, 계룡, 태안, 예산, 홍성, 금산, 서천)
전북	도센터 150 지원	3개시(전주, 군산, 익산)	1개 시당 50 (전주, 군산, 익산)
전남	도센터 200 지원	4개시(목포, 여수, 순천, 광양)	4개 시당 60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경북	도센터 150 지원	10개 시·군(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울진군, 칠곡군)	10개 시·군 (포항145, 경산85, 경주125, 구미104, 김천85, 문경85, 상주85, 안동85, 울진85, 칠곡114)
경남	도센터 270 지원	14개군(양산시, 의령군, 창원시,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남해군, 거창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14개 시·군 (양산시 79, 의령군 75, 창원시 280, 창녕군 85, 통영시 30, 하동군 75, 함안군 75, 함양군 75, 합천군 75, 남해군 85, 거창군 75, 밀양시 170, 사천시 78, 산청군 75)
제주	도센터 없음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	2개시(제주시 160, 서귀포시 181)

참고②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

□ 연도별 센터 도비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 계	55,000	110,000	110,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175,000	187,000	213,900
도 센터	55,000 (50%)	110,000 (50%)	110,000 (50%)	125,000 (50%)	125,000 (50%)	100,000 (40%)	100,000 (40%)	175,000 (100%)	187,000 (100%)	213,900 (100%)
청주시 센터										
충주시 센터										
제천시 센터				22,000 (20%)	22,000 (20%)	22,000 (20%)	22,000 (20%)			
옥천군 센터										
음성군 센터										

□ '17년 센터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 고
합 계	887,900	213,900	580,000	94,000	
도 센터	220,900	213,900		7,000	
청주시 센터	225,000		200,000	25,000	
충주시 센터	155,000		120,000	35,000	
제천시 센터	130,000		107,000	23,000	
옥천군 센터	69,000		67,000	2,000	
음성군 센터	88,000		86,000	2,000	

□ '17년 센터 근무현황

(단위 : 명)

구 분	근무인원 현황					비 고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 회 복지사	사 례 관리사	
합 계	20	6	3	4	7	
도 센터	5	1	1	1	2	장애인부모회
청주시 센터	5	1	1	3		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 센터	3	1	1		1	“
제천시 센터	3	1			2	“
옥천군 센터	2	1			1	“
음성군 센터	2	1			1	“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2015.3.27.)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08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17.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2(수곡동), 충청북도새마을회관 3층 301호
- 위탁기간 : 3년(2018. 1. ~ 2020. 12.)
- 수탁기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있고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 現,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2015. 1. 1. ~ 2017. 12. 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사 업 비 : 213.9백만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장애가족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 시군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Control-tower로 시군센터 업무지원
- 센터 미설치 지역의 사례관리사업
-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사 파견 등
- 장애의 이해·인식개선사업 및 장애가족을 위한 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실태 및 욕구조사, 정보제공 등
- 자문·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타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도가 요청하는 사업 등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별첨)

3. 참고사항

가. 現,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2(수곡동), 충청북도새마을회관 3층 301호
- 규 모 : 대지 971.10m² / 건물연면적 2,838.76m²(지하1층, 지상5층)
※ 사용면적 : 138.6m²(42평) / 지상3층(301호)
-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2015. 1. 1. ~ 2017. 12. 31.)
- 사 업 비 : 213.9백만원(도비 100%)
- 주요사업 : 장애인가족 정책개발 및 복지서비스 지원, 역량강화사업, 재가방문 사례관리 등
- 조직·인력 : 5명(센터장 1, 총괄팀장 1, 팀원 3)
※ 센터장 : 김영애(前,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근무)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경과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15. 1. 1. ~ '17. 12. 31. / 3년주기 1회)

나. 관계법령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위탁기간)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 청 북 도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17.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민간위탁(3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

I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위탁기간)

II 위탁개요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72(수곡동), 충청북도새마을 회관 3층 301호
- 위탁범위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전반
- 위탁기간 : 3년('18. 1. 1. ~ '20. 12. 31.)
- 수탁기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있고 장애인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사 업 비 : 213.9백만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사무

- 장애가족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 시군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Control-tower로 시군센터 업무지원
- 센터 미설치 지역의 사례관리사업
- 위기발생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사 파견
- 장애의 이해·인식개선사업 및 장애가족을 위한 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실태 및 욕구조사, 정보제공 등
- 자문·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타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도가 요청하는 사업 등

※ 現,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회장 최난나, '15.1.1.~'17.12.31.)

Ⅲ 추진체계 및 절차

①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17. 9월
② 의회동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10월 회기중) * 동의안 '붙임' 참조	'17. 10월
③ 수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 - 방법 : 공개모집(공고15일) 또는 재위탁 - 자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있고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17. 11월
④ 수탁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공개모집(고득점자 선정) 재위탁(사업실적, 운영효율성 등 고려)	'17. 11월
⑤ 협약공증	• 협약체결 및 공증	'17. 12월
⑥ 사무개시	• 위·수탁 사무개시	'18. 1. 1.

Ⅳ 세부 추진계획

①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공개모집 : 道홈페이지 공고(15일) 후 사업계획서 접수,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정(고득점자 선정)

- 재 위 탁 : 위탁기간 동안 사업실적, 운영성과 등 고려 수탁기관선정 심의위
원회 심의·결정

○ 신청자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능력이 있고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
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중앙법인은 충청북도지부(지
회)가 설치된 경우

○ 신청제외 및 무효대상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 등
- 영리 또는 생계목적, 명의대여 등으로 하는 위탁 운영체 등

○ 위탁조건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위탁관련 시설 일체를 타 용도로 사용 금지
- 위수탁 협약서 공증은 협약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

②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개최시기 : '17. 11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6~9명 이내(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수탁자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협력 등
- 계획설명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의 경우 : 고득점기관 선정
 - 재위탁의 경우 : 사업실적, 운영성과 등 고려 선정

[3]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17. 12월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업무 인수·인계
 - ※ 업무 인수·인계(수탁기관 변경시)

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7. 10월
-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 '17.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7. 11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7.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18. 1.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자격제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마친 때에는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의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수탁 운영협약서

제4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위탁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변경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②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위탁기간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성과가 저조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또는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예산의 축소 및 예산 미확보의 경우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협약 하고자 할 경우 “갑”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을”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을”의 위탁기간 동안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협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중도해지 또는 변경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2개월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목록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